

## 시행권 포기 약정서

사업에 대한 표시


위 치	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97-2번지 외 1필지			
건축주	주식회사 [REDACTED]			
건축허가 내용	허가번호	연면적 (m <sup>2</sup> )	주용도	비고
			근린생활시설, 다중주택	

'시행사'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업의 토지 소유권, 공사중인 건축물 및 본 건축과 관련된 모든 권리 ('시행권')를 주식회사 위편딩 ('회사') 또는 '회사'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한다.

- 가. '시행사'에게 부도, 파산, 회생절차, 청산 등의 개시신청 및 이와 유사한 사유 발생
- 나. '회사'와 협의 없이 최초 계약시점의 예정공정률 대비 설계/감리자의 공정률 계산표 또는 '회사'의 공정확인상 실행공정률 (누계)이 10%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
- 다. '클라우드 펀딩 계약서' 제7조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
- 라. 대상건물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'회사'가 판단되는 경우
- 마. '회사'의 승인 없이 대출약정서상 이자지급이 7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

위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주식회사 위편딩대부를 매수인으로하여 3개월마다 갱신하여 제출하고,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한다. '시행권'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은 '시행사'가 부담하며 본 사업에 제3의 권리자 (수분양자 및 채권자 등) 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된 의무 또는 채무는 '시행사'가 부담하기로 한다.

2019년 8월 28일

구분	계약 주체 정보		직위 및 서명
시행사/ 채무자	성명 (상호)	주식회사 [REDACTED]	대표이사 [REDACTED] 
	법인등록번호	[REDACTED]	
	주소	인천광역시 [REDACTED] [REDACTED]	
	연락처		

